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5,969,574	10,079,087
일반회계	287,587,160	8,627,615
특별회계	48,382,414	1,451,472
기타특별회계	48,382,414	1,451,47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1,551	39,047
수질개선특별회계	32,636,963	979,10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8,070	17,042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4,808,787	144,264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99,476	8,98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200,062	96,002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29,983	18,8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5,792	16,97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371,730	131,152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17,06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